

김포시 시민옴부즈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제2972호
----------	--------

제출년월일 2022. 3. .
제출자 감사담당관

1. 제안이유

-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국민권익 보호를 위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부터 제38조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지방옴부즈만) 설치·운영을 적극 권장하고 있음.
- 우리 시도 인구 증가에 따른 대도시 진입을 앞두고 증가하는 시민들의 고충 민원을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시민옴부즈만을 설치·운영하여 주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에 대한 주민의 신뢰를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김포시 시민옴부즈만 설치의 목적 (안 제1조)
- 나. 김포시 시민옴부즈만의 기능, 구성 (안 제3조, 제4조, 제6조~제14조)
- 다. 김포시 시민옴부즈만 추천위원회 구성·운영 (안 제5조)
- 라. 고충민원의 조사 및 처리 등 (안 제15조~제32조)
- 마. 사무기구의 구성 및 운영 (안 제33조, 제34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붙임
-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 다.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 2022. 1. 27. ~ 2022. 2. 16. (20일)
- 나) 예고결과 : 의견 없음

2) 부서협의 결과

가) 규제사전심사 : 원안동의

나) 성별영향분석 : 원안동의

다)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3) 중앙 및 도 관련부서

가) 중앙부처 : 국민권익위원회

나) 경 기 도 : 조사담당관(옴부즈만운영지원팀)

김포시 시민옴부즈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부터 제38조까지에 따라 김포시 시민옴부즈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주민의 기본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주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충민원”이란 김포시(이하 “시”라 한다) 및 법령에 따라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이하 “수임·수탁기관”이라 한다)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를 포함한다)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주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주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을 말한다.
2. “신청인”이란 이 조례에 따라 시민옴부즈만에게 고충민원을 신청한 개인·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시민옴부즈만”(이하 “옴부즈만”이라 한다)이란 시 및 그 소속기관에 대한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에 관련된 제도개선을 위하여 제4조에 따라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
4. “사무기구”란 옴부즈만의 고충민원 조사 및 권고 등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기구를 말한다.
5. “시민사회단체”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행정기관에

등록한 단체를 말한다.

6. “경기도옴부즈만”이란 경기도에 선임되어 있는 옴부즈만을 말한다.

제2장 옴부즈만 기능·구성 등

제3조(기능) ①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주민이 신청한 고충민원의 조사·처리
2. 옴부즈만 스스로의 발의에 의한 고충과 관련된 사안의 채택 및 조사
3. 다수인민원, 공공갈등 민원, 복합민원 등 고충민원과 관련된 조사 및 합의, 조정, 시정권고, 의견표명, 제도개선 권고 등 처리
4.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및 김포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가 다수인민원, 공공갈등민원, 복합민원 등 고충민원과 관련하여 옴부즈만에게 의뢰하는 사안에 대한 조사·처리
5. 반복적이고 고질적인 민원에 대한 조사 및 합의, 조정 등 처리
6. 옴부즈만이 처리한 고충민원의 결과 및 행정제도의 개선에 관한 실태조사와 평가
7. 옴부즈만의 활동과 관련된 국내·외 기구 또는 기관들과의 교류 및 협력
8. 옴부즈만의 활동과 관련된 개인·법인 또는 단체와의 협력 및 지원
9. 그 밖에 옴부즈만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안에 대한 조사·처리

제4조(구성) ① 옴부즈만의 정수는 3명 이내로 한다.

- ② 옴부즈만은 시장 소속하에 두되,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독립성을 보장한다.
- ③ 옴부즈만은 인격과 덕망을 겸비하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우며 지방행정과 법률 등에 관하여 뛰어난 식견을 가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 시장이 위촉한다.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4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4. 건축사·세무사·공인회계사·기술사·변리사·감정평가사 등의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직종에서 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5.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시민사회 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 ④ 읍부즈만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없다.
- ⑤ 시장은 읍부즈만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임기 중 결원된 경우에는 새로운 읍부즈만을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후임으로 위촉되는 읍부즈만의 임기는 새로이 개시된다.

제5조(읍부즈만 추천위원회 구성·운영) ① 시장은 읍부즈만의 위촉을 위하여 읍부즈만 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추천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위촉하며, 추천이 끝난 후 추천위원회는 자동으로 해산한다.

1. 부시장
2. 인사업무 담당국장
3. 시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변호사협회의 추천을 받은 변호사
4. 시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지역 대학의 총창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교수
5. 시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관내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6. 해당 추천위원회에서 의결을 통해 관내 협회, 시민사회단체, 학계, 법조계 등에서 추가로 위촉하는 경우

③ 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추천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읍부즈만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④ 추천위원회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읍부즈만 추천 대상자를 의결하며, 복수로 추천도 가능하다.

제6조(대표읍부즈만) ① 대표읍부즈만은 읍부즈만 중에서 호선(互選)으로 선출하며, 읍부즈만을 대표한다.

② 부읍부즈만은 대표읍부즈만이 지명한다.

③ 대표읍부즈만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읍부즈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① 회의는 대표읍부즈만이 소집한다.

② 읍부즈만은 직무범위를 각기 달리하여 독립하여 업무를 수행하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시정권고, 제도개선 권고, 감사의뢰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종전 의결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사항

3. 그 밖에 대표읍부즈만이 회의에서 처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2조에 따라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한 읍부즈만은 제2항에 따른 재적의원수의 계산에서 제외한다.

제8조(관할권) 읍부즈만은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관할권을 가진다.

1. 시 본청 및 소속기관

2. 시에서 출자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공기업 및 출연기관

3. 시에서 사무를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기관

제9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읍부즈만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정당에 입당한 당원

4.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사람

제10조(겸직금지) 옴부즈만은 재직 중 다음 각 호의 직을 겸할 수 없다.

1.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 의원
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행정기관 등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

제11조(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① 옴부즈만은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②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와 다르게 위촉 해제되지 아니한다.

1.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제1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심신상의 장애로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경우
4.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제척·기피·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제12조(옴부즈만의 제척·기피·회피) ①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옴부즈만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옴부즈만이 해당 사안의 신청인과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옴부즈만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증언, 감정, 법률자문 또는 손해사정을 한 경우
4. 옴부즈만이 되기 전에 해당 사안에 대하여 감사, 수사 또는 조사에 관여한 경우
5. 옴부즈만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신청인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 옴부즈만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의결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ombudsman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의결을 회피(回避)할 수 있다.

제13조(전문가 자문) ① ombudsman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전문적·기술적 사항에 대하여 자문하기 위하여 전문가를 초빙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경우 ombudsman은 해당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비밀유지 의무) ombudsman으로 있거나 있었던 사람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3장 고충민원의 조사 및 처리 등

제15조(고충민원의 신청) ① 누구든지(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 ombudsman에게 고충민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ombudsman과 국민권익위원회, 경기도ombudsman에게 중복으로 제기한 고충민원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하여 처리한다.

제16조(고충민원의 접수) ① ombudsman에게 고충민원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작성하여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으로 신청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구두로 신청할 수 있다.

1. 신청인의 이름과 주소(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그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이름)

2. 신청의 취지·이유와 고충민원 신청의 원인이 된 사실내용

3. 소송 및 다른 법령에 의한 불복구제절차의 신청 유무

4. 그 밖에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② ombudsman은 고충민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접수를 보류하거나 거부할 수 없으며, 접

수된 고충민원 서류를 부당하게 되돌려 보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옴부즈만이 고충민원 서류를 보류·거부 또는 반려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7조(고충민원의 이송) ① 옴부즈만은 접수된 고충민원 중에서 관계행정기관 등에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이를 관계행정기관 등에 이송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입·수탁기관의 장은 옴부즈만에게 처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옴부즈만은 제1항에 따라 고충민원을 이송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옴부즈만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신청인에게 권리의 구제에 필요한 절차와 조치에 관하여 안내할 수 있다.

제18조(고충민원의 조사) ① 옴부즈만은 고충민원을 접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6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안에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60일의 범위에서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2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고충민원의 내용이 거짓이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고충민원 신청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였을 경우.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4. 신청인이 구체적인 증거나 사실을 제시하지 않고 일방적인 주장만 하는 경우
5. 그 밖에 옴부즈만이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9조(조사의 방법) ① 옴부즈만은 제18조에 따라 조사를 할 때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시 또는 수입·수탁기관에 대한 설명 요구 또는 관련자료·서류 등의 제출 요구
2. 시 또는 수입·수탁기관의 직원·신청인·이해관계인이나 참고인의 출석 및 의견 진술 등의 요구
3. 조사사항과 관계 있다고 인정되는 시 또는 수입·수탁기관의 장소·시설 등에 대한 실지조사
4. 감정의 의뢰
 - ② ombudsman은 사무기구의 직원이 제1항에 따라 실지조사를 하거나 진술을 듣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야 한다.
 - ③ 시 또는 수입·수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요구나 조사에 성실하게 응하고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20조(직권에 의한 조사) ① ombudsman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관할 범위에 있는 기관을 대상으로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

② ombudsman이 직권으로 조사한 경우에는 시장 및 시의회에 특별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고충민원의 각하 등) ① ombudsman은 접수된 고충민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고충민원을 각하할 수 있다.

1. 행정심판, 행정소송이나 감사원의 심사청구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불복 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2. 법령에 따라 화해·알선·조정·중재 등 당사자간의 이해조정을 목적으로 행하는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3. 수사 및 형 집행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관장기관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또는 감사원의 감사가 착수된 사항이거나 감사원이 처분을 요구한 사항
4. 사인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5. 제8조에서 정한 관할권의 범위에서 벗어나는 사항
6. 그 밖에 ombudsman이 조사하기에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사항

② ombudsman은 제1항에 따라 고충민원을 각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신청인에게 권리의 구제에 필요한 절차와 조치에 관하여 안내할 수 있다.

제22조(합의의 권고) ombudsman은 조사 중이거나 조사가 끝난 고충민원에 대한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당사자에게 제시하고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

제23조(시정의 권고 및 의견의 표명) ① ombudsman은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결과 처분 등이 위법·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 또는 수입·수탁기관의 장에게 적절한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② ombudsman은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결과 신청인의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시 또는 수입·수탁기관의 장에게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제24조(제도개선의 권고 및 의견의 표명) ombudsman은 고충민원을 조사·처리하는 과정에서 조례나 그 밖의 정책·제도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 또는 수입·수탁기관의 장에게 이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제25조(의견제출 기회 부여) ① ombudsman은 제23조 또는 제24조에 따라 시 또는 수입·수탁기관의 장에게 시정 또는 제도개선의 권고를 하기 전에 시 또는 수입·수탁기관의 장과 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미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시 또는 수입·수탁기관의 직원·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은 ombudsman이 개최하는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제26조(결정의 통지) ombudsman은 고충민원의 결정내용을 지체 없이 신청인 및 시

또는 수입·수탁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7조(처리결과에의 통보 등) ① ombudsman으로부터 제23조 또는 제24조에 따른 권고 또는 의견을 받은 시 또는 수입·수탁기관의 장은 이를 존중하여야 하며, 그 권고 또는 의견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ombudsman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권고를 받은 시 또는 수입·수탁기관의 장이 그 권고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ombudsman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ombudsman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내용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28조(재심의) 시 또는 수입·수탁기관의 장은 ombudsman의 권고 또는 의견대로 조치하기가 곤란하거나 특별한 사정변경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ombudsman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ombudsman은 해당 사안을 재심의 할 수 있다.

제29조(감사의 의뢰) 고충민원의 조사·처리과정에서 시 또는 수입·수탁기관의 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법·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감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30조(권고 등 이행실태의 확인·점검) ombudsman은 제23조 또는 제24조에 따른 권고 또는 의견의 이행실태를 확인·점검할 수 있다.

제31조(운영상황의 보고 및 공표 등) ① ombudsman은 매년 운영상황을 시장과 시의회에 보고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ombudsman은 제1항에 따른 보고 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장과 시의회에 특별보고를 할 수 있다.

제32조(국민권익위원회 및 경기도ombudsman과의 관계) ① 고충민원을 처리할 때는

옴부즈만과 국민권익위원회, 경기도옴부즈만은 상호 독립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상호 협의 또는 지원을 요청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상호간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옴부즈만은 다수인민원, 공공갈등 민원, 복합민원 또는 중앙차원의 법·정책·제도 등에 관한 사안 중 국민권익위원회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

제4장 사무기구의 구성 및 운영

제33조(사무기구) ① 시장은 옴부즈만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무기구를 둔다.

② 옴부즈만은 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 소속 공무원의 근무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근무자의 인사·처우 등에 우대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34조(운영지원) ① 시장은 옴부즈만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옴부즈만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옴부즈만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옴부즈만은 업무 수행을 위해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자문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실·과·소		감사담당관
입 안 자	실·과·소장 성 명	감사담당관 박 만 준
	팀 장 직위·성명	청렴조사팀장 현 진 환
	담 당 자 성명·전화	청렴조사팀장 현진환(☎2093)